

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50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8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사용료 감면사항 및 전용사용허가 우선순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
-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위해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
- 보다 유연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을 위한 대회 및 행사의 의미 구체화(안 제6조)
- 나. 사용료 감면조항 개편(안 제11조)
- 1) 감면대상의 범위 명확히 함(안 제11조제1항제1호가목, 제3호마목)
 - 2) 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감면대상 확대(안 제11조제1항제3호거목)
 - 3) 연습사용료(별표2)에 명시된 여성사용자의 감면사항을 본칙에 반영(안 제11조제1항제4호가목)
- 다.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(안 제23조)
- 라. 야구장 및 실내테니스장 전용사용료 개정(안 별표 1)
- 마. 테니스 연습사용료 삭제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4. 7. 23. ~ 8. 7. (15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라) 소비자정책심의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

나) 경 기 도 : 체육진흥과

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필요한” 을 “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” 체육회 “라 한다)” 를 “체육회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다른 지방자치단체” 를 “지방자치단체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“장애인” 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거. 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
4. 10퍼센트 감면

가.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나.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(소지자에 한함)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

1. 주간 : 06:00-18:00

2. 야간 : 18:00-24:00

별표 1 중 야구장란 및 실내테니스장(면당),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야구장	주 간	3시간	90,000	120,000	180,000	240,000
	야 간	ㄷ	120,000	150,000	240,000	300,000
실내테니스장 (면당)	주 간	2시간	50,000	60,000	100,000	120,000
	야 간	ㄷ	60,000	70,000	120,000	140,000
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, 축구장,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○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,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 ○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. ※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. ○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(별표 5)를 납부하여야 한다(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는 제외한다). ○ 야구장의 경우 상기 전용사용료 외에 운영주체(수탁기관)가 야구 경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시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----	--

별표 2 중 테니스장(면당)란을 삭제하고, 체력단련장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체력단련장	40,000	30,000	4,000	3,000	-	-	
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--	---	---	--
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. ○ 월회원은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. ○ 사계절철매장의 사용료는 야외수영장 사용을 포함하며, 평일 50명 이상일 경우 30퍼센트, 200명 이상일 경우 40퍼센트를 감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는 40퍼센트를 할인함. ○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. ※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. ○ 노인·어린이는 어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 ○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,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.
--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체육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체육과장 이 상 익
	팀 장 직위·성명	체육시설팀장 민 경 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신 경 원(☎258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결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체육진흥을 위하여 <u>필요한</u>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관람권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<u>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</u>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: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6조(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</u>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에서 주최 · 주관하는 ----- 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관람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1. <u>체육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11조(사용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 별표 5 및 별표 7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.

1. 전액감면

가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
나. ~ 라. (생략)

3. 50퍼센트 감면

가. ~ 라. 삭제
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

바. ~ 하. (생략)

거. 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

4. 10퍼센트 감면: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(소지자에 한함)

제11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

1. -----

가. ---- 지방자치단체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마. -----
-----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-----

바. ~ 하. (현행과 같음)

거. 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
4. 10퍼센트 감면

가.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나.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(소지자에 한함)

②·③ (생략)

제23조(사용시간)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	주간	야간
체육시설	하절기 (3월~10월)	06:00~18:00	18:00~22:00
	동절기 (11월~다음해2월)	06:00~17:00	17:00~22:00
시민회관	전시실 다목적홀	09:00~18:00	18:00~22:00

[별표 1]

전용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이외 행사		
		평일	토·공휴일	평일	토·공휴일	
종합운동장	육상장(트랙)	주간 4시간	40,000	60,000	200,000	300,000
		야간 〃	60,000	90,000	300,000	400,000
	축구장	주간 1시간	40,000	45,000	75,000	100,000
		야간 〃	45,000	50,000	100,000	125,000
풋살장	주간 1시간	5,000	10,000	-	-	
	야간 〃	10,000	15,000	-	-	
일반축구장(인조잔디)	주간 1시간	30,000	35,000	75,000	100,000	
	야간 〃	35,000	40,000	100,000	125,000	
다목적체육관	주간 4시간	40,000	60,000	80,000	120,000	
	야간 〃	60,000	90,000	120,000	180,000	
테니스장(면당)	주간 2시간	10,000	20,000	20,000	30,000	
	야간 〃	20,000	30,000	30,000	40,000	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사용시간)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

- 주간 : 06:00-18:00
- 야간 : 18:00-24:00

[별표 1]

전용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이외 행사	
		평일	토·공휴일	평일	토·공휴일
종합운동장	육상장(트랙)	---	---	---	---
		---	---	---	---
	축구장	---	---	---	---
		---	---	---	---
풋살장	---	---	---	---	
	---	---	---	---	
일반축구장(인조잔디)	---	---	---	---	
	---	---	---	---	
다목적체육관	---	---	---	---	
	---	---	---	---	
테니스장(면당)	---	---	---	---	
	---	---	---	---	

테니스장 (면 당)	40,000	30,000	2,000	1,500	1,000	800	
사계절 썰매장	-	-	7,000	5,000	5,600	4,000	
체력단련장	40,000	30,000	-	-	-	-	
에어로빅장	40,000	30,000	-	-	-	-	
탁구장	40,000	30,000	2,000	1,500	1,000	800	
파크골프장	45,000		3,000	-	-	-	장비 대여료 1,000
비 고	<p>○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.</p> <p>○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일일회원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.</p> <p>○ 월회원은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.</p> <p>○ 수영장 연습사용료(월회원)는 여성사용자(13세 이상 55세 이하)에게 10퍼센트를 할인함.</p> <p>○ 사계절썰매장의 사용료는 야외수영장 사용을 포함하며, 평일 50명 이상일 경우 30퍼센트, 200명 이상일 경우 40퍼센트를 감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는 40퍼센트를 할인함.</p> <p>○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. ※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.</p> <p>○ 월회원으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1회 사용(체협)료는 월회원료의 10퍼센트로 한다.</p> <p>○ 노인·어린이는 어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</p> <p>○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,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.</p>						

<삭 제>							
사계절 썰매장	---	---	---	---	---	---	
체력단련장	---	---	4,000	3,000	---	---	
에어로빅장	---	---	---	---	---	---	
탁구장	---	---	---	---	---	---	
파크골프장	---		---	---	---	---	---
비 고	<p>○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○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○ ----- ----- -----.</p> <p>※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○ ----- -----.</p> <p>○ ----- -----.</p>						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2., 2017. 12. 29., 2019. 10. 29., 2021. 6. 1., 2023. 11. 16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 - 다. 삭제 <2016. 8. 2.>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[본조신설 2012. 7. 17.]

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등”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인체조직”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”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”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

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5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”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·관리하는 김포시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6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”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.

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12.31, 2023.8.9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3.8.9.>

1. “체육시설 “이란 김포시(이하 ” 시 “라 한다)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” 부속시설 “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
2. “시민회관”이란 전시실, 다목적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.<신설 2018.12.31>
3. “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방송·광고게시·공연·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12.31.,2022.9.21.>
4. “전용사용”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, 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개정 2018.12.31>
5. “연습사용”이란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, “연습사용료”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 <제4호에서 이동 2018.12.31>
6. “사용자”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8.12.31.,2022.9.21.>
7. “관람자”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, “관람료”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 <제6호에서 이동 2018.12.31>
8. “단체”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. <제7호에서 이동 2018.12.31>
9. “어린이”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3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<제8호에서 이동 2018.12.31><개정 2023.12.29.>
10. “청소년”이란 중·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<제9호에서 이동 2018.12.31><개정 2023.12.29.>
11. “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(직업군인 제외), 사회복지무원 및 전환복무자(의무경찰대원, 의무소방원)을 말한다. <제10호에서 이동 2018.12.31>,<개정 2020.3.25., 2022.11.16.>
12. “어른”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<제11호에서 이동 2018.12.31.,2022.9.21.><개정 2023.12.29.>
13. “노인”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 <제12호에서 이동 2018.12.31><개정 2023.12.29.>
14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8.12.31.,2022.9.21.>

15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「김포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.<신설 2018.12.31.><개정 2022.9.21., 2023.12.29.>

제3조(시설의 개방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포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3.25.>

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일요일에 한하여 09:00 ~ 18:00까지 전면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.(단, 체육경기는 불가함)<신설 2018.12.31>

제4조(개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9.21.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
2. 시설의 개·보수
3.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5조(사용허가)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8.12.31>

②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, 성명, 사용 할 시설, 사용목적, 사용기간 및 시간,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12.31>

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으므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

제6조(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<개정 2018.12.31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
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3.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4. 장애인, 장애인 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(이하 “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의 체육활동 및 행사<신설 2018.12.31><개정 2023.12.29.>
5.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<제4호에서 이동 2018.12.31, 개정 2023.8.9.>
6. 경기연습(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. 단, 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)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<제5호에서 이동 2018.12.31, 개정 2023.8.9.>
7.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, 전람 등 행사 <제6호에서 이동 2018.12.31>

② 시장은 시민회관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

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<신설 2018.12.31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
2.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
3.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4. 장애인등의 행사<개정 2023.12.29.>
5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

제6조의2(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)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건립목적(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,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)에 따라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12.29.]

제7조(사용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31>

1. 음주·흡연·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<신설 2023.8.9.>
2.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[제1호에서 이동,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<2023.8.9.>]
3.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[제2호에서 이동,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<2023.8.9.>]<신설 2018.12.31>
4.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[제3호에서 이동,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<2023.8.9.>]<신설 2022.9.21.>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<제2호에서 이동 2018.12.31, 제4호에서 이동 2023.8.9.>

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2.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9조(사용료)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7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.<개정 2018.12.31>

1. 전용사용 시 :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<개정 2022.9.21.>
2. 연습사용 시 :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<개정 2022.9.21.>

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제9조의2(강습프로그램의 운영) ① 시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8.12.31>

② 제1항의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료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<신설 2018.12.31>

제10조(관람권)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(초청장,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)을 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22.9.21.>

1.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: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

2. 제1호 이외의 행사: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

3. 프로경기: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(단, 김포 FC는 제외한다)

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20퍼센트(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퍼센트)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2.9.21.>

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 별표 5 및 별표 7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. <단서 신설 2018.12.31., 2020.3.25.>

1. 전액감면(개정 2015.6.10)

가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<개정 2020.3.25.>

나. <개정2016.10.31, 삭제 2018.12.31>

다.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및 태권도 시범단의 훈련

라. 김포 FC 및 김포 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·경기<신설 2022.9.21.>

2. 80퍼센트 감면

가. 체육회(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<개정 2020.3.25., 2023.12.29.>

나.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

다.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<개정 2020.3.25.>

라.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
마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에 되어 있는 노인(단,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 별표 1과 별표 2의 수영장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.)<신설 2018.12.31., 2022.9.21., 2023.8.9.>

바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<마목에서 이동 2018.12.31>

3. 50퍼센트 감면

가. 삭제 <2020.3.25.>

나. 삭제 <2020.3.25.>

다. 삭제 <2020.3.25.>

라. 삭제 <2020.3.25.>
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<개정 2019.7.26., 2022.9.21.>

바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

사.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<개정 2018.12.31., 2020.3.25.>

아. 어린이<개정 2015.6.10>

자.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<신설 2018.12.31., 2020.3.25.>

차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<신설 2020.3.25.>

카. 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<신설 2020.3.25.>

타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신설 2022.9.21.><개정 2023.12.29.>

파. 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<신설 2022.9.21.>

하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<신설 2023.12.29.>

거. 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<신설 2023.12.29.>

4. 10퍼센트 감면: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(소지자에 한함)

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,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.

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.<신설2016.10.31>

제12조(사용료 반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(관람료 포함)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<개정 2022.9.21.>

1.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

가. 사용개시 5일 전까지: 받은 사용료 전액

나. 사용개시 1일 전까지: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

다. 사용일 이후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

2.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<개정 2018.12.31>

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(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<개정 2023.8.9.>

② 삭제 <2022.9.21.>

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(반환 신청일)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<신설 2023.8.9.>

④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 <개정 2022.9.21., 제3항에서 이동 2023.8.9.>

제13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<개정 2020.3.25.>

2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3.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<개정 2018.12.31>

4.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<신설 2020.3.25.>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,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.<개정 2018.12.31., 2020.3.25., 2022.9.21.>

제14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<개정 2022.9.21.>
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.

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, 홍보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)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(단,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)<신설 2020.3.25., 2022.9.21.>

제15조(양도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·연습사용허가 또는 시민회관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<개정 2018.12.31, 2019.7.26., 2020.3.25., 2022.9.21.>

제16조(손해배상)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,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.<개정 2020.3.25.>

② 삭제 <2020.3.25.>

제17조(체육지도자의 배치)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18조(체육시설의 관리)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,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,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31., 2022.9.21.>

제19조(대표 및 검인) ① 관람권은 당해 시설에서 대표한다. 다만,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8.12.31>

② 모든 관람권, 초대권, 임원증,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·법인이나 개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31, 2023.8.9.>

② 삭제 <2020.3.25.>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31., 2022.9.21.>

④ 삭제 <2020.3.25.>

제20조의2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·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대장·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3.25.]

제21조(위탁계약의 해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<개정 2020.3.25.>

1.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

2.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<개정 2018.12.31>

3. 그 밖에 국가 또는 도·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<개정 2018.12.3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내용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,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<신설 2020.3.25.>

제22조(체육관련 단체의 지원)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사용시간)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	주간	야간
체육시설	하절기 (3월~10월)	06:00~18:00	18:00~22:00
	동절기 (11월~다음해2월)	06:00~17:00	17:00~22:00
시민회관	전시실 다목적홀	09:00~18:00	18:00~22:00

제2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김포시 주차장 조례」, 「김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」의 예에 따른다.<개정 2023.8.9.>

[별표 1]

전 용 사 용 료

(단위 : 원)

시 설 별		사용구분		체 육 경 기		체육이외 행사	
	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
총 합 운 동 장	육상장(트랙)	주 간	4시간	40,000	6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	〃	60,000	90,000	300,000	400,000
	축구장	주 간	1시간	40,000	45,000	75,000	100,000
		야 간	〃	45,000	50,000	100,000	125,000
	풋살장	주 간	1시간	5,000	10,000	-	-
		야 간	〃	10,000	15,000	-	-
일반축구장 (인조잔디)		주 간	1시간	30,000	35,000	75,000	100,000
		야 간	〃	35,000	40,000	100,000	125,000
다목적체육관		주 간	4시간	40,000	60,000	80,000	120,000
		야 간	〃	60,000	90,000	120,000	180,000
테니스장 (면당)		주 간	2시간	10,000	20,000	20,000	30,000
		야 간	〃	20,000	30,000	30,000	40,000
족구장·풋살장		주 간	1시간	5,000	10,000	50,000	80,000
		야 간	1시간	10,000	15,000	80,000	120,000
탁구장(대당)		주 간	1시간	10,000	15,000	15,000	20,000
		야 간	1시간	15,000	20,000	20,000	30,000
야구장		주 간	3시간	50,000	80,000	100,000	150,000
		야 간	〃	80,000	100,000	150,000	200,000
실내테니스장 (면당)		주 간	2시간	20,000	30,000	40,000	60,000
		야 간	〃	30,000	40,000	60,000	80,000
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, 축구장,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○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,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 ○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. ※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. ○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(별표 5)를 납부하여야 한다(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는 제외한다).
-----	--

[별표 2]

연 습 사 용 료

(단위 : 원)

시설별	월회원(자유이용)		일일회원(1회)				비 고
	어 른	군인, 청소년	일 반		단 체		
			어 른	군인 청소년	어 른	군인, 청소년	
다목적 체육관	40,000	30,000	2,000	1,500	1,000	800	
수영장	55,000	45,000	5,500	3,500	4,500	3,000	
테니스장 (면 당)	40,000	30,000	2,000	1,500	1,000	800	
사계절썰매장	-	-	7,000	5,000	5,600	4,000	
체력단련장	40,000	30,000	-	-	-	-	
에어로빅장	40,000	30,000	-	-	-	-	
탁구장	40,000	30,000	2,000	1,500	1,000	800	
파크골프장	45,000		3,000	-	-	-	장비대여료 1,000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. ○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일일회원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. ○ 월회원은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. ○ 수영장 연습사용료(월회원)는 여성사용자(13세 이상 55세 이하)에게 10퍼센트를 할인함. ○ 사계절썰매장의 사용료는 야외수영장 사용을 포함하며, 평일 50명 이상일 경우 30퍼센트, 200명 이상일 경우 40퍼센트를 감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는 40퍼센트를 할인함. ○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. ※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. ○ 월회원으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1회 사용(체험)료는 월회원료의 10퍼센트로 한다. ○ 노인·어린이는 어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 ○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,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. 						